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제공일 : 2012. 7. 3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
과 장 : 강 인 구
사무관 : 이 세 오
전 화 : 500-2359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없음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7월 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각각 어업허가, 같은날 동시에 허가키로

- 60년만에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,
상습 불법어업자는 영구 퇴출 -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갱신하고, 최첨단 IC 카드가 내장된 전자허가증 발급

○ 연근해 어업별로 3개년간 연차적으로 실시, 어선척수가 적은 근해 어선부터 우선 실시

※ '13년 : 근해어업(3천여척), '14년 : 연안(44천여척) '15년 : 구획(6천여척)

◇ 허가일제 갱신시 일정기준 이상 상습불법어업자는 재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업질서 확립

※ 재허가 금지대상 : 허가기간내 어업허가 2회 이상 취소되거나 2년내 어업 허가정지가 150일 이상인 자

□ 농림수산식품부(장관 서규용)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어온 어업허가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.

○ 1953년 도입된 어업허가 제도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1994년 어선감척사업 이후 어업허가는 특권화, 이권화 추세다.

○ 특히, 칼라복사기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위·변조하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,

○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하는 자가 오히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기 위해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.

□ 금번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고 갱신과 동시에 IC 카드가 부착된 첨단 전자허가증을 발급하며,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.

○ 전국에 있는 53천여척의 어선에 발급된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 및 갱신하여 왔고, 일일이 종이로 허가증을 발급하여 허가갱신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었다.

○ 어업인 입장에서는 허가신청시기를 일실하여 허가가 소멸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, 종이허가증은 컬러복사기 성능발전으로 위·변조가 가능하여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었다.

□ 전국 동시허가는 어선척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·도지사가 허가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어선 3,000여척 부터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선 실시하고, 어선척수가 많고 시·군·구에서 허가하고 있는 연안과 구획어업의 어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실시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된다.

○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해어업의 경우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할 계획이다.

구분	어업별	허가기간	허가시기
1단계	근해어업	'13.1.1~'17.12.31, 5년	'12.11.1~'12.12.31, 2개월
2단계	연안어업	'14.1.1~'18.12.31, 5년	'13.10.1~'13.12.31, 3개월
3단계	구획어업	'15.1.1~'19.12.31, 5년	'14.11.1~'14.12.31, 2개월

○ 동시 허가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오는 8월과 9월 2달간을 동시허가 사전 예고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, 10월에는 동시 허가 대상자에게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.

□ 동시 어업허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어업인에게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*를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 동시 허가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.

* 전자허가증에는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, EEZ 허가정보, TAC 할당 및 소진량, 면세유 공급 및 조업실적, 어획물 위판관리, 입출항신고, 선박 검사정보 등 수록

○ 전자허가증을 발급받은 어업인들은 전자허가증에 입력된 다양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 폰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어업허가를 동시에 갱신하면서 상습 불법어업자는 어업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킴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.

○ 5년간의 허가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자 또는 2년이내에 허가정지 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는 재허가를 금지하고,

○ 어선을 불법개조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선박검사 시 확인하여 어업허가신청인 지자체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.

□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수산정책실장은 어업허가 일제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, 전자허가증은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해 민원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전자허가증과 연계한

『전국 동시어업허가제』 추진계획

2012. 7

목 차

I. 어업허가 제도 운영현황	1
II. 어업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	2
III. 추진방향	3
IV. 과제별 세부추진계획	4
1. 동시 어업허가제 도입	5
2. 전자어업허가증 도입	6
3. 상습 불법어업자 퇴출 제도 도입	9
V. 추진일정	10

I. 어업허가제도 운영 현황

□ 어업허가제도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없이 확일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특권화, 이권화 등 본질과 다르게 변질

○ '94년 이후 어선감척사업으로 어업허가는 더욱 이권화 추세
* 어선의 가격보다 어업허가 프리미엄이 최대 6배에 이르는 실정(잠수기 30억원)

□ 지난 10여년간 감척중심의 정책추진, 신규 어업허가 금지로 젊은 인력의 신규 진입이 단절되어 고령화 가속

○ '94년 이후 17천척을 감척하였으나 신규허가 처분은 엄격히 금지
* 어선척수(척) : ('00) 68,629 → ('05) 64,579 → ('07) 63,110 → ('11) 47,521
* 고령화 : 65세 이상 ('05) 18.8% → ('10) 23.1

□ 상습 불법어업자가 오히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어업구조 정착

○ 불법어업 등을 불문하고 허가유효기간 만료(5년)시 허가갱신이 관행화되어 있고,
○ 특히, 허가취소 시에도 1년만 경과하면 재허가가 법적으로 보장
* 전남지역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은 지난 2년간 수십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법조업 계속 감행

□ 칼라복사기 성능 발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위·변조하는 등 어업질서 문란 사례발생

◆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, 현행 어업허가 시스템으로는 경쟁력 제고에 한계

II. 어업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

□ 전국 동시어업허가제 도입으로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절감하고, 무자격(불법어업 또는 무조업) 어선정비를 통한 조업질서 확립 필요

○ 그동안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허가기간 내 허가 갱신을 못하는 문제 발생
* 동시어업허가제 도입시 향후 30년간 3,337억원의 경제효과 예상(법제연구원, '11년)

○ 일부 어업인은 면세유, 어업보상, 감척사업 등을 목적으로 실제 조업은 하지 않으면서 어선만 보유하는 부작용 발생
* 고질적 불법어업자에 대한 영구적 퇴출제도 미비로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허가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

□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종이어업허가증을 첨단 IT시대에 맞추어 개선 필요성 대두

○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현재의 종이 허가증은 바닷물 및 염분에 훼손될 우려도 높은 실정
○ 칼라복사기 성능발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위·변조하여 어업질서 문란 야기 사례 발생

◆ 전자어업허가증이란?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최첨단 어업허가증



○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, EEZ 허가정보, TAC 할당 및 소진량
○ 면세유공급, 조업실적, 어획물 위판관리, 입출항신고, 선박검사정보

Ⅲ. 추진방향

- ◆ 전자허가증 발급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
 - 3개 어업별 연차적 실시로 제도개선에 따른 현장혼란 최소화
 - 허가기간은 1.1부터 5년간으로 통일하여 행정효율 및 어업인 편익도모
- ◆ 상습 불법어업자 영구퇴출 및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

□ 상대적으로 어선척수가 적고 시·도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는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13년부터 도입

- 시·군·구에서 허가 처분하는 연안 및 구획어업은 근해어선을 통한 시스템 완비 후 순차적으로 도입

□ 허가 기간은 어업별 도입년도의 1.1부터 5년간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

- 지자체의 허가처분은 허가기간 시작일 2~3개월(전년도 10~12월) 전부터 실시

구 분	허가척수	허가시기	허가기간
근해어업	3,029척	'12.11.1~'12.12.31, 2개월	'13.1.1~'17.12.31, 5년
연안어업	44,045척	'13.10.1~'13.12.31, 3개월	'14.1.1~'18.12.31, 5년
구획어업	6,423척	'14.11.1~'14.12.31, 2개월	'15.1.1~'19.12.31, 5년

□ 동시 어업허가처분 전 충분한 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방치어선 등 해당 어업인은 허가대상에서 제외

-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영구퇴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추진

Ⅳ.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

1 동시 어업허가 제도 도입

- ◆ 1단계 : 근해어업 동시허가 : '13.1~'17.12, 5년간
- ◆ 2단계 : 연안어업 " : '14.1~'18.12, 5년간
- ◆ 3단계 : 구획어업 " : '15.1~'19.12, 5년간

□ 『동시 어업허가제』 도입 타당성 검토(완료)

- 불법어업 및 무조업선 근절, 자원의 적정관리와 어업질서확립, 감척사업의 효과 도모를 위해 동시 어업허가제 도입 시급
 - *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78%가 동시어업허가에 찬성(법제연구원, '11년)

□ 동시어업허가제 도입에 따른 법률자문(완료)

- 기 허가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시에 5년간의 어업허가를 하는 제도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이도 가능
 -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5년간 재 허가는 법적문제 없음
- 자격 및 조건 심사 등을 통해 일부 허가 받은 자에게 어업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법률상 근거 없이 처분할 수 없음
 - 허가기간 단축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할 경우 법 개정 필요
- * 동시허가제는 기존의 어업허가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발생하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

□ 허가기간 일괄 조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('12.7월~, 우리부)

- 연근해어업의 허가기간을 조정하여 동시에 허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(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부칙)

제1조(어업허가 기간의 조정) 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, 연안, 구획어업의 어업허가 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하여 허가한다.

1. 근해어업 :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업허가의 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.
2. 연안어업 :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업허가의 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.
3. 구획어업 :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업허가의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완료되어 새로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허가한다.

□ 동시어업허가 집행지침 마련·통보('12.7월, 우리부→시·도, 시군구)

- 동시어업허가 집행시 지자체간 행정절차의 일관성·통일성 유지를 위해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

* (주요내용) 신청대상·시기·방법, 현장확인 절차 및 방법, 신청시기 일실자에 대한 처리, 전자허가증 발급 방법 등

- 신규어업허가시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기존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기간 만큼(1년에 20% 씩) 감면

- 기존 허가기간중 처분된 행정처분은 동시어업허가시 소멸시키되, 이후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

- 동시허가 이후 일정기준 이상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관련제도를 마련하여 어업허가 금지 추진

□ 동시어업허가 사전예고제 운영('12.8~9월, 시·도 주관)

-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 어업인의 협조와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전예고제 실시

- 동시 어업허가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사전 예고

- 예고기간 중 동시 어업허가 대상자 파악 및 개별 통지

- 동시 어업허가의 목적, 신청 기관 및 시기 등을 통지

□ 동시 어업허가 실시('12.11~12월, 시·도 주관)

- 동시허가는 대상 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

- 대상 어업인으로부터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대상 어선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

1)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보유 유무

2) 당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동일한 지 여부(어선번호, 선박 길이 등 확인 점검)

3) 어선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등

- 허가대상 어선의 이상이 없는 경우 전자어업허가증 발급

□ 위반어선에 대한 처리('13.1~2월, 시·도 주관)

- 허가받은 어선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(수산업법 제47조 등)

□ 동시 어업허가 결과보고('13. 2월중, 시·도)

◇ 2015년까지 전자어업허가증으로 전면 교체(시도·시군구)

- 발급시스템 구축 : '12. 1~10월
- 전자허가증 발급 : '13년(근해), '14년(연안), '15년(구획)

◇ 2016년 이후 면허어업으로 확대 추진

□ 관계법령 개정(우리부, 7월~)

○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

- 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어업허가증 발급)

○ (주요내용) 어업허가 신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서식 변경

□ 연근해 어업허가 D/B 재정비(6~8월, 시도·시군구 주관)

○ 어업허가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오류 데이터 재정비* 추진

- 주 업종 등 누락항목 입력, 입력 오류사항 정정, 중복입력 내용 삭제 등

○ 11개 시·도 및 76개 시·군·구별 데이터 정비 근로 인원 확보 후 D/B 정비

- 근로비 정산은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및 구축 사업비로 우리부에서 지원(1억원)

□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시스템 구축(10월까지, 우리부 주관)

○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을 위한 장비 보급

- 허가증 발급기(18대), 업무용 및 단속용 리더기(140개)

○ 전자허가증에 입력된 내용을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

○ 어업활동 종합 조회 시스템 구축

-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 폰을 통한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

□ 허가와 관련된 어업활동 연계 시스템 구축

○ EEZ허가정보, TAC 할당 및 소진량(시군구) : '12. 7

○ 입출항신고시스템(해양경찰청) : '12. 7

○ 선박검사정보(선박안전기술공단) : '12. 8

○ 면세유공급, 조업실적, 위판관리 시스템(수협) : '12. 8

○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시스템(우리부) : '12. 10

□ 전자어업허가증 발급(동시 어업허가제와 연계하여 추진)

○ 근해어업 허가증 발급 : '12.11~'12.12월

○ 연안어업 허가증 발급 : '14.11~'15. 1월

○ 구획어업 허가증 발급 : '15.11~'15.12월

□ '13년 소요 예산 확보 추진 : 25억원

○ 연안어업 전자어업허가증 발급(10만개)

○ 카드 발급기(67대), 업무용 및 단속용 리더기(140대) 보급

○ 포털 및 모바일 시스템 운영

- ◇ 상습 불법어업자가 오히려 수익을 높일수 있는 구조를 타파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보호
- 일정 수준이상 불법어업자 영구퇴출 및 어선 불법 개조 예방 시스템 구축

□ 상습 불법어업자 영구퇴출 제도 도입

- 현재 어업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면 재허가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다시 허가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
- 허가기간내 어업허가 2회 이상 취소되거나 2년내 어업허가 정지가 150일 이상인 자는 재허가 금지(수산업법 제41조 제5항 개정)

□ 허가받은 어선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을 통한 상습 불법행위 사전 차단

- 선박안전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각종 어선검사 시 불법개조 등 허가사항과 다른 경우 허가관청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
- 통보를 받은 행정관청은 불법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어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(어선법 사무취급 요령 제32조 신설)

□ 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

-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선 또는 어구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경우 어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개정)

V. 추진 일정

□ 세부추진 계획안 확정(내부방침) : 6월중

□ 의견수렴

- 어업인, 수협, 시·도 의견조치 : 7월초

□ 지역별 설명회·공청회 개최(동·서·남해권역) : 7월중

- 어업허가관련 규제개선방안*을 포함하여 실시

* 조업구역 재조정, 어구·어법 조정, 유사어업통폐합, 알기쉬운 법령만들기

□ 법령개정안 확정 : 7월중

□ 법령개정 추진

- 부내 법령정비 협의회 심의 : 7월중

- 부 처 협 의 : 8월초

- 입 법 예 고 : 8월말

- 규 제 심 사 : 9월중

- 법제처 심사 : 10월중

* 상습불법어업자 퇴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은 별도 추진